

방폐물 해상운반과 관련된 해상보험 문제

홍성화* · 이창희***

*, ** 한국해양대학교

A Study on the problem of Marine Insurance of Vessels Carrying Radioactive Waste

Sung-Hwa Hong* · Chang-Hee Lee***

*, ** Korea Maritime and Ocean University

핵심용어 : 방사능폐기물, 중저준위, 보험, 선주상호보험, 면책

Key Words : Radioactive Waste, Low and Intermediate-Level, Insurance, P&I, Exclusion

방폐물 해상운반과 관련된 해상보험 문제

I. 서론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해상운송 중 화재, 전복, 충돌 등과 같은 사고 발생시 해상보험의 관점에서 조기 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실무적인 대안을 제공하고, 각종 위험요인들을 기존의 체계, 법률, 운항 형태 등에 기초하여 분석 및 식별하고자 함

방폐물 해상운반과 관련된 해상보험 문제

III. 한진정정누리호 위험성 담보를 위한 보험제도

◇ 선체보험에 대한 검토

- 선체보험과 관련된 주요 쟁점
 -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선체손해의 보상문제
 - ① 위험약관의 적용
 - 1983년 ITC-Hulls 위험약관조항에서는 1970년 ITC-Hulls에 규정되어 있던 "선상에 있으나 여부를 불로하고" 라는 문구를 삭제
 - 따라서 피보험선박 내에서의 액상지 또는 원자로의 고장 또는 사고로 인해 피보험선박에 발생하는 사고뿐만 아니라, 육상 또는 다른 선박에 있는 액상지 또는 원자로의 고장 또는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보험선박의 사고에 대해서도 담보할 것을 의도

방폐물 해상운반과 관련된 해상보험 문제

II. 한진정정누리호에 대한 위험(Risk) 형태

◇ 위험의 형태

- 인적위험
 -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험, 개인에게 국한되는 특징
 - 예) 조기사망의 위험, 노령의 위험, 질병이나 병약한 건강상의 위험, 실업의 위험 등
- 물적위험
 - 재산에 손실 또는 멸실을 야기하는 위험
 - 직접손해 : 재산의 물리적 손상, 파괴 또는 도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정적 손해
 - 예) 선박충돌의 경우 해당선박의 물리적 손상
 - 간접손해 : 재산의 물리적 손상, 파괴 또는 도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간접적 손해
 - 예) 선박충돌의 경우 선박수리, 건조 등에 소요되는 일수에 대한 이익 상실분
- 배상책임위험
 - 과실이나 부주의 또는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상책임의 결과
 - 현재 또는 미래의 자산의 손해의 가능성성 의미

방폐물 해상운반과 관련된 해상보험 문제

III. 한진정정누리호 위험성 담보를 위한 보험제도

◇ 선체보험에 대한 검토

- 선체보험과 관련된 주요 쟁점
 - 선박의 불감항으로 인한 선체손해의 보상 문제
 - ④ 선박의 불감항 손해의 면책요건
 - 1983년 ITC-Hulls는 피보험선박의 감항성담보에 관한 규정이 없음
 - MIA 제39조에서 선박의 감항성담보를 규정

MIA 제39조 제1항 "항해보험이 경우에는 발항 당시에 선박이 무보인 특정 해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감항성이 있어야 한다는 특시담보가 있다"

MIA 제39조 제5항 "기간보험이 경우에는 해상사업의 어떤 단계에서든 선박이 감항성이 있어야 한다는 특시담보는 없다. 다만, 피보험자가 알면서도 선박을 불감항상태로 항해하게 하였다면 보험자는 불감항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 First Author : shhong@kmou.ac.kr, 051-410-4274
† Corresponding Author : chlee@kmou.ac.kr, 051-410-4642

VII. 방폐물 운송선박 효율적 관리 · 운영 방안

III. 한진청정누리호 위험성 담보를 위한 보험제도

◇ 선주상해보험(P&I 보험)에 대한 검토

- 선주상해보험의 의의
 - 선주상해보험(Protection and Indemnity Insurance ; P&I)이란 선박소유자, 용선자, 기타 선박 운항자의 선박 운항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3자에 대한 배상 책임 및 비용 등을 선박소유자들이 설립한 상호조합에서 보장하는 보험임
 - 선주상해보험은 선박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임
 - 1836년 De Daux v. Salvador Case, 1846년 ‘사망사고법(Fatal Accident Act)’ 제정, 1847년 ‘항만, 도크 및 부두 약관법(Habour, Docks and Piers Clauses Act)’ 제정 등으로 선박소유자의 책임 대폭강화
 - 이에 따라 선박소유자들이 출몰 배상책임과 인명 사상에 대한 배상책임을 스스로 담보하기 위하여 서로를 보호하여 주는 P&I Club을 만든 것

18

방폐물 해상운반과 관련된 해상보험 문제

IV. 중 · 저준위방사성폐기물 해상운송에 따른 원자력손해배상책임

◇ 원자력손해배상책임의 기본원칙

- 책임집중
 - 책임집중이란 원자력사고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원자력사업자가 부담한다는 것
 - 즉,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사업자의 원자력시설에 존재하는 핵물질로 인하여 발생한 원자력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그 시설에서 또는 그 시설로 향하거나 그 시설로부터 유출된 핵물질의 운송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
 - 책임집중의 원칙은 설정 원자력사고가 원자력사업자 이외의 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라고 손해배상책임은 원자력사업자만이 부담하는 것
 - 그 결과 피해자는 오로지 원자력사업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23

VII. 방폐물 운송선박 효율적 관리 · 운영 방안

1. 운송선박 운항 불능 및 사고 등 위험성 담보를 위한 보험제도

✓ 한진청정누리호 위험성 담보를 위한 보험제도

◇ 선주상해보험(P&I 보험)에 대한 검토

-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선원의 질병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문제
 - (1) 선원재해보상규정
 - 2006년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2006) 규정 제4.2조에서는 선원의 고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질병, 상해 또는 사망의 재정적 결과로부터 선원이 보호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을 두고 있음
 - 우리나라는 선원법 제94조 내지 제106조의2에 선원재해보상에 관하여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음

19

방폐물 해상운반과 관련된 해상보험 문제

IV. 중 · 저준위방사성폐기물 해상운송에 따른 원자력손해배상책임

◇ 원자력손해배상책임의 기본원칙

- 면책사유의 제한
 - 원자력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원자력손해를 전적으로 원자력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한 경우가 있음
 - 따라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원자력손해가 전정 또는 이에 준하는 사변 등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을 예외적으로 면제할 필요가 있음
- 국가보상
 - 원자력사고는 그 손해가 보험의 통상적 인수범위를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보통이기 때문에 각국은 형태는 다를지라도 국가의 후견적 개입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26

방폐물 해상운반과 관련된 해상보험 문제

III. 한진청정누리호 위험성 담보를 위한 보험제도

◇ 선주상해보험(P&I 보험)에 대한 검토

-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선원의 질병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문제
 - (2)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선원의 질병 또는 사망
 - 보상근거규정

선원법 제94조 제1항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때에는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될 때까지 선박소유자의 비용으로 요양을 시키거나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선원법 제96조 제1항, 제2항 “선박소유자는 제94조 제1항의 규정외에 위하여 요양중에 있는 선원에게 4월의 범위안에서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치료될 때까지 매월 1회 총상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해보상을 할하여야 하며, 4월이 지나고 치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치료될 때까지 매월 1회 총상입금의 7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해보상을 할하여야 한다.”

선원법 제99조 제1항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직무상 사망(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중의 사망을 포함)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족에게 총상입금의 1천300일본배 상당하는 금액의 유족보상을 할하여야 한다.”

20

방폐물 해상운반과 관련된 해상보험 문제

IV. 중 · 저준위방사성폐기물 해상운송에 따른 원자력손해배상책임

◇ 원자력보험

- 의의
 - 원자력보험은 원자력에너지의 광학적 유효이용과 함께 탄생하였으며, 해상보험, 화재보험 등과 비교할 때 그 역사는 불과 몇 십년 정도임. 원자력 보험은 크게 원자력 재산보험,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 원자력수송배상책임보험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원자력보험 “플”
 - 원자력보험은 원자력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이며, 모든 보험종류 중에서 보험인수가 가장 어려운 종목중의 하나임. 이는 원자력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원자력위험, 즉 방사능에 의한 손해가 발생하게 되어 물질·인적 손해의 거대화가 발생할 가능성 때문임.
 - 우리나라 원자력보험 “플”의 경우 1970년 재무부장관이 13개 손해보험회사에 대해 원자력보험 공동영업의 승인허가를 하였고, 1971년에 13개 손해보험회사를 회원사로 하는 원자력보험 “플”이 독립운영하였으며, 1975년에는 한국전력과 그리 원자력 발전소가 수송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함으로써 최초로 원수업무를 개시함. 2017년 현재 회원사는 11개임.

27